

# 환경국가와 환경영향평가제도\*

金 溟 謙\*\*

## < 차 례 >

- I. 들어가는 말
- II. 환경의 보전과 환경국가원리
- III. 지속적 발전과 환경영향평가
- IV.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영과 실천방향
- V. 맺음말

## I. 들어가는 말

지난번 남극의 빙봉이 무너져 내린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그 원인은 지구의 온난화현상이라고 하였다.<sup>1)</sup> 바야흐로 인간은 스스로 뿌린 문명의 잔재로 인하여 생존의 터전을 상실할 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 한번 훼손되면 다시 원상회복이 어려운 자연환경과 우리의 생활환경, 그래서 21세기의 화두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

\* 본고는 한국환경법학회 제73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보완·정리한 것이다.  
\*\* 동국대학교 법대 교수, 법학박사  
1)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빙봉의 붕괴나 빙하의 소멸은 해수면의 상승 등 환경을 변화시켜 상상할 수 없는 환경의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동아일보 2002. 3. 25 참조.

이 중요한 환경이 헌법의 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중반 이후다. 두 번의 세계대전을 치른 후 인류가 전쟁의 참혹함으로부터 회복되기 시작한 1960년대, 또 다른 시련이 서서히 지구를 감싸기 시작하였다. 이 시점 이후 환경문제는 우리의 생존과 연결되고 바로 헌법문제화 하였다. 1970년대에 오면서 범세계적인 환경보전운동이 전개되었다. 1972년 스톡홀름의 선언은 인간에게 하나의 권리로서 환경권이 인권으로 격상되는 전환점이 되었고, 이에 보조를 맞춘 많은 국가들은 환경보호를 위한 법제화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그렇지만 권리로서의 환경보다는 국가의 목표 내지 방향설정의 한 부분으로서 보호의 대상인 환경의 의미가 더 강하였다.<sup>2)</sup>

1980년 우리 헌법은 환경권을 하나의 기본권으로 명문화하였다. 헌법상의 환경에 관한 규정은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그 농도를 더해가면서 단순히 권리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권리에 상응하는 환경보전의무도 병행되었다.<sup>3)</sup> 환경은 보장을 요구하는 권리이면서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의 대상으로 변하였다. 그렇지만 환경은 그 대상이 법조문에 명기된다고 보호되거나 보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사실은 수 없이 행해지는 환경의 오염 내지 훼손 등에서 알 수 있다. 이 모두가 인간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자행되는 것이며, 때로는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보호라는 이름으로 환경은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우리의 경우 지난 해 발생하였던 동강댐 사건이나, 시화호 사건 등 대형사건에서 볼 수 있다. 자연환

2) 헌법적으로 환경을 기본권으로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목표규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각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고문헌, 환경조항에 관한 비교헌법적 연구, 공법연구 제28집(2000. 1), 181면 이하 참조.

3)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에서 환경보전의무를 명문화하였다.

경은 개발하면 훼손되고, 생활환경은 편리성을 추구하는 인간의 이기심으로 파괴되는 것이다.

환경의 특징은 손을 대면 오염, 훼손, 파괴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자연 그대로 살수는 없다. 그러기에는 인류의 문명이 너무 앞서버렸기 때문에, 이 하나뿐인 지구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를 고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가 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환경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바로 여기서 환경과 개발의 조화의 관점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등장하였다.

21세기 환경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의 법치국가는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법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리 현행 환경법의 시스템은 환경에 관한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을 필두로 개별 환경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환경의 대상을 중심으로 한 개별법체제는 나름대로 장점을 갖고 있으나, 복합적인 환경문제에 대하여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법적용과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에서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각 국은 다시 단일 법체계로 되돌아가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나,<sup>4)</sup> 아직 우리는 현행 법체계를 고수하고 있다.

환경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검토하여 억제하거나 완화시키려는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국가를 지향하는 현대국가들에게 중요한 제도임에 틀림이 없다. 이미 우리는 오래 전부터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받아들여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현실문제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

4) 대표적으로 독일의 경우 1990년 이후 통합환경법안에 대한 작업이 학계나 실무계에서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에 대하여 Kloepfer, Zur Kodifikation des Umweltrechts in einem Umweltgesetzbuch, DÖV 1995, 745ff.; ders., Zur Kodifikation des Besonderen Teils eines Umweltgesetzbuches, DVBl. 1994, 305ff. 참조.

거나, 급변하는 사회에 따라가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노정되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다. 정부는 1999년 말 기존 환경영향평가법을 폐지하고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제정하여, 소위 통합 환경영향평가법을 시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부분에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법제의 변화가 있었으나, 이 역시 현실 속에서 많은 문제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관점에서 본고는 21세기 환경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환경국가에서 헌법상의 원리로서 환경국가원리를 기본원리로 채택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영과 그 문제점을 규범적 측면에서 간단히 검토해 보기로 한다. 그리고 환경국가의 전개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미래지향적인 실천방향에 대하여 고찰한다.

## II. 환경의 보전과 환경국가원리

### 1. 환경보전의 역사

#### (1) 환경오염과 환경보전

인간은 하나뿐인 지구환경 속에서 자연스러운 삶을 영위해 왔다.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근대에 오면서 격변의 시대를 거쳤고, 그 가운데에는 산업혁명이라는 커다란 전환점을 경험하면서 기본적인 사회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변화를 경험하였다. 산업사회는 대량생산을 통하여 인간에게 물질적인 혜택을 가져다 주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문명의 혜택을 받은 인간의 삶은 양적으로 풍부해졌

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혜택 이면에는 자연환경의 파괴로 인한 고통이 수반되었다.<sup>5)</sup> 즉 지속적인 산업화·도시화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진행되었고, 그래서 환경보전의 문제는 국가적 과제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 (2) 환경보전과 환경법의 기능과 역할

환경보전은 단순히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않는 수동적 의미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유지시켜 나가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 선택해야 한다. 헌법국가에서는 입법부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의 형식으로 보호와 규제를 한다. 이런 점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법의 제정과 환경법의 기능은 환경침해에 대한 규제, 환경보전을 위한 수단 등이다.

## 2. 헌법상의 기본원리로서 환경국가원리

### (1) 환경에 관한 헌법상의 근거

현대의 많은 국가들은 환경문제를 헌법적 차원으로 끌어 올렸다. 환경보호의 문제는 현대국가에 있어서 숙명적인 과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sup>6)</sup> 국가의 정당화는 환경보호의 과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지

5) 1960년대 환경의 재앙은 우리가 뿌리 문명의 잔재로부터 온다는 것을 역설한 작품 레이첼 카슨(Rachel Carson)의 봄의 침묵(Silent Spring)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결코 인간에게 혜택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다. 정대수 역, 봄의 침묵, 레이첼 카슨 저, 1995.

6) Hofmann, Technik und Umwelt, in: Benda/Maihofer/Vogel (Hrsg.), Handbuch des Verfassungsrechts, 2. Aufl., 1994, S. 1005 Rn. 1.

여부에 따라 결정되게 되었다.<sup>7)</sup> 따라서 다수의 국가는 실정헌법에 어떤 형태로든 환경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sup>8)</sup>

환경에 관한 헌법규정을 갖고 있는 국가는 여러 형태로 명문화하고 있다. 이 형태를 유형별로 나눈다면 기본권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와 국가의 목표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로 대별할 수 있다.<sup>9)</sup> 먼저 기본권 형식으로 헌법에서 수용하고 있는 것은 1972년 스톡홀름의 선언 이후 인간의 권리로서 환경을 보는 입장이다. 이런 유형에 속하는 국가로는 한국과 스페인, 그리고 러시아 등을 들 수 있다.<sup>10)</sup> 또한 기본권으로서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각 국가의 헌법체제에서 의하여 자유권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회권으로 볼 것인지 따라 다르다.<sup>11)</sup>

그 다음 환경에 관한 규정을 국가목표규정으로 헌법에서 수용하고 있는 국가로는 독일을 들 수 있다.<sup>12)</sup> 국가목표규정은 국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여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정하고 계속적으로

7) Murswiek, Umweltschutz als Staatszweck, 1995, S. 1.

8) 법률적인 차원에서 보다 헌법적 차원에서 환경보호를 다루는 것이 더 낫다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고문현, 환경헌법(국가목표조항과 기본권조항)에 관한 연구, 환경법연구 제21호(1999), 388면 주 23) 참조.

9) 이에 대하여 자세히는 고문현, 공법연구 제28집 제2호(2000. 1), 184면 이하 참조. 동인은 여기서 제3의 유형으로 기타의 결합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제3의 유형은 앞의 두 유형의 범주에서 다룰 수 있는 유형이라 생각한다.

10) 미국의 경우 연방헌법에 환경권이나 환경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환경권을 하나의 인권으로 보고 보통 연방헌법 증보 제5조나 제9조를 근거로 삼고 있다. 연방의 권리장전 제5조는 적법절차 규정으로써 환경의 침해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에 대한 침해로 볼 수 있으며, 자연권을 규정하고 있는 제9조의 의하여 환경권의 부정이나 경시는 용인될 수 없다고 본다.

11) 고문현, 환경법연구 제21권(1999), 390면 이하 참조.

12) 독일에 있어서 환경권과 관련하여 헌법의 전개과정과 태도에 대해서는 김세규·한귀현, 현대국가의 과제와 환경보호, 동아법학 제23호(1997), 280면 이하 참조.

충족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헌법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sup>13)</sup> 국가목표규정은 장래 국가가 지향하고 이루어야 할 과제를 부여하고 있으나 그 실현시기와 방법 등은 입법자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그 특색이 있다. 또한 국가목표규정은 개개의 국민에게 주관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본권조항과 구별된다.

우리 현행헌법은 제35조에 환경권과 환경보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환경권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나,<sup>14)</sup> 일반적으로 정의한다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sup>15)</sup> 또한 우리 헌법은 환경에 관한 권리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와 함께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국민은 환경규정을 통하여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주장하고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기본권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우리 헌법질서에서 국민은 이 규정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환경권 침해에 대한 사법

13) Schulze-Fielitz, in: Dreier (Hrsg.), Grundgesetz, Art. 20a Rn. 20ff.

14) 환경권을 정의하기 위한 환경의 범위에 대해서 학자마다 견해를 달리한다. 보통 환경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그 대상으로 하나, 학자에 따라서는 자연환경만 환경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다. 홍성방, 헌법학, 2003, 583면 이하. 그러나 오늘날 자연환경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의 바탕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환경정책기본법은 제3조에서 환경에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의 개념에 대한 독일의 견해는 좁은 의미에서 순수한 자연적인 환경(natürliche Umwelt)만 환경으로 본다. 여기서 자연환경이란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내지 문화적 환경을 제외한 환경을 의미하나, 인간에 의하여 형성되고 변화된 자연환경을 포함한다. 따라서 독일에서 자연적 환경이란 순수한 자연적인 환경과 인간에 의하여 형성되는 생활과 밀접한 환경 즉 대기, 물, 일조, 악취, 소음 등도 포함된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Kloepfer/Brandner, Umweltrecht, 2. Aufl., 1998, S. 17ff.; Maunz/Dürig, Grundgesetz, Art. 20a Rn. 36 참조.

15) 이에 대하여 자세히는 고문현, 환경권, 토지공법연구 제13집(2001. 11), 271면 이하; 문광삼,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과 국가목표로서의 자연환경, 환경법연구 제22권(2000), 219면 이하; 홍성방, 환경기본권, 환경법연구 제22권(2000), 473면 이하.

구제를 요청할 수 있으나, 현실에서 원고적격이나 소의 이익을 확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주택정책의무는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규정되었다고 보나, 주택의 문제는 환경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하여도 어디까지나 사회보장정책의 문제라고 본다.<sup>16)</sup> 따라서 우리 헌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형태의 환경보호에 관한 헌법의 수용은 다시 한번 검토를 요한다.

## (2) 환경국가원리

각 국가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생존을 위한 기초라는 인식하에 1970년대 이후 헌법적 차원에서 환경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환경문제가 헌법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기본권으로 수용하지 않은 국가들은 국가의 목표 내지 방침으로 수용하였다. 특히 독일은 환경에 대한 인간의 권리라는 인식과 함께 국가나 국민에게 환경은 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대상으로써 보았고, 그 과정에서 환경국가라는 표현이 등장하였다. 즉 198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환경국가(Umweltstaat)라는 용어가 출현하였다.<sup>17)</sup> 이렇게 등장한 환경국가는 이미 헌법의 명문규정을 통하여<sup>18)</sup> 또는 불문의 기본원리로서 기존의 국가원리인 법치국가나

16) 이와 같은 견해로 홍성방, 환경법연구 제22권 (2000), 488면.

17) 환경국가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학자는 독일의 미하엘 클뢰퍼(Michael Kloepfer) 교수라고 한다. Kloepfer, Auf dem Weg zum Umweltstaat?, in: ders. (Hrsg.), Umweltstaat, 1989, S. 43f. 이에 대해서 자세히는 Hofmann, Umweltstaat, in: Badura/Dreier (Hrsg.), Festschrift 50Jahre Bundesverfassungsgericht II, 2001, S. 875. 환경국가와 동일한 의미로 환경적 헌법국가라는 표현을 쓴 학자도 있다. Steinberg, Der ökologische Verfassungsstaat, 1998.

18) 독일의 경우 기본법 제20조 제1항은 독일 연방공화국이 민주적·사회적 연방국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8조 제1항 제1문은 각주의 헌법질서는 기본법에 있어서 공화적, 민주적, 사회적 법치국가의 기본원리에 상응해야 한다고 기본원리를 명문화하고 있다.

사회국가처럼 또 하나의 국가원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오늘날 환경보전, 환경보호의 문제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였고, 또한 환경문제는 인간의 경제적 삶과 활동과 상충되거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전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대상으로 성장하였다.<sup>19)</sup> 우리 헌법은 환경에 관한 내용을 기본원리가 아니라 기본권형태로 규정하고 있다.<sup>20)</sup> 그렇지만 환경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가가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환경의 보호와 보전을 위한 국가와 국민의 의무도 요구되고 있다.

헌법상 기본원리란 헌법의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지도원리를 말하며,<sup>21)</sup> 그 존재형태는 명문으로 존재하건 헌법전 중에서 추상적으로 반영되어 있던 간에 국가와 국민이 준수하고 존중해야 할 최고의 가치규범이다. 이미 헌법 여러 조항에 걸쳐 있는 환경과 개발의 문제는 환경국가원리가 다른 헌법상의 기본원리처럼 헌법국가의 틀 속에서 국가와 사회에 있어서 기본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환경은 인간에 있어서 자연적인 삶의 기초로서, 미래세대에 대한 기성세대의 책임으로서 그 핵심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헌법을 지배하는 기본원리로서 가치를 갖는다.<sup>22)</sup> 따라서 환경국가원리는 헌법을 지배하는 국가원리로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된다.<sup>23)</sup>

19) Schulze-Fielitz, in: Dreier(Hrsg.), Grundgesetz, Art. 20a Rn. 6ff.

20) 환경권이 우리 헌법에 들어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홍준형, 환경법, 38면 이하 참조.

21)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3, 126면 이하.

22) Schulze-Fielitz, in: Dreier Grundgesetz, Art. 20a Rn. 31ff.

23) 독일의 경우 많은 학자들이 새로운 국가목표인 환경보호를 기존의 헌법상의 기본원리나 기본권에 의한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원리, 법치국가원리, 사회국가원리나 연방국가원리와 동등한 기본원리로 보고 환경국가원리로 명명

### Ⅲ. 지속적 발전과 환경영향평가

#### 1. 개발 가능한 환경의 의미

##### (1)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개발과 환경의 보전이란 양면은 서로 대응하는 개념은 아니다. 그러나 인간은 생존을 위한 개발에서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개발을 통하여 주변환경을 침해하거나 오염·훼손시켜왔다. 환경보전과 지속적인 개발의 두 방향이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이다.<sup>24)</sup> 당시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은 유엔환경계획기구(UNEP)와 세계야생생물기금(WWF)의 협력으로 세계자연자원보전전략을 작성하면서 환경보전의 틀 속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사용하였고, 이 이후 세계환경개발이사회(WCED)에 의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은 미래세대의 욕구를 손상함 없이 현재 세대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개발로 정의되었다.<sup>25)</sup> 지속가능한 개발은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립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기존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간의 첨예화된 개발과 환경보전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양자간의 조화를 구체화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Hofmann, "Umweltstaat": Bewahrung der natürlichen lebensgrundlagen und Schutz vor den Gefahren und Risiken von Wissenschaft und Technik in staatlicher Verantwortung, in: Badura/Dreier(Hrsg.), Festschrift 50 Jahre Bundesverfassungsgericht, 2001, S. 875 참조.

24) 지속가능한 개발의 사상적 배경에 대해서는 이영준, 국제환경법론, 1995, 226면 이하 참조.

25) 상계서, 225면 이하 참조.

지속가능하다는 의미는 세계환경개발위원회의 견해에 의하면 “미래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환경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개발의 목표를 장기적인 전망에 기초하여 설정함으로써 현세대에서만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고려하는 개발을 말한다.<sup>26)</sup> 따라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이란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면서 경제적 이익 등 다른 가치와 실천적인 조화를 모색하면서 세대간의 형평과 사회적 평등을 확보하여 환경과 개발을 조정하고 통합시키는 것을 말한다.

## (2) 지속가능한 개발원칙의 구체화

현행 법체계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원칙은 헌법규정으로부터 근거하여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통합환경영향평가법) 등에 수용되어 있다.

먼저 헌법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기본권규정과 경제조항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헌법은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제34조 인간다운 생활권, 제35조 제3항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 확보를 위한 국가의 의무, 제119조 제2항 경제의 균형성정과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경제규제와 조정, 제120조 제2항 국토와 자원의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한 국가의 계획 의무, 제122조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26) 환경과 경제의 관계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지속적인 개발의 핵심은 한정된 지구의 자원을 절약하면서 폐기물의 발생이나 환경오염 내지 침해를 줄이고 경제도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환경과 경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Schulze-Fielitz, in: Dreier Grundgesetz, Art. 20a Rn. 35f. und Fn. 121 참조.

규제, 그리고 제123조 농어촌종합개발계획의무와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의무 등의 규정을 통하여 동 원칙을 구현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와 제2조, 그리고 제24조 등을 통하여 환경가치의 존중, 환경의 이용에 있어서 환경보전의 우선적 고려를 통하여 미래 세대까지 배려하는 등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을 수용하고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은 제1조에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미리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검토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원칙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과 전개

###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역사

환경영향평가(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란 환경에 대한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측하고 평가하여 그 예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려는 효과적인 환경보호수단이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국가정책이 집행되기 전에 발생가능한 결과를 사전에 예측해 보려는 시도에서 시작되었다.<sup>27)</sup>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69년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에서 출발한다. 동법은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공사시행에 앞서 개발자에게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및 평가하게 하여 사업승인과정에서 대책이나 각종의 규제적 결과를

27) 김번용/오영석, 환경행정론, 대영문화사, 1997, 383면 참조.

결부시키는 사전예방원칙을 규정하였다.<sup>28)</sup>

환경영향평가법은 국제적으로 국제기구에 의하여 일반적 원칙의 정립이 되기 시작하였다. 1974년 경제협력개발기구는 대규모 계획의 환경영향분석을 선언하였고, 1982년 유엔총회가 채택한 자연현장 속에는 환경영향평가의 실시가 포함되어 있었다. 1972년 스톡홀름 유엔환경회의의 결과에 의하여 유엔환경계획이 창설되었고, 동 기구는 1987년 국제적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원칙과 지침을 채택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국제조약의 형태로 발전하기 시작한다. 1991년 유럽경제위원회는 초국가적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국경을 뛰어넘는 국가 간의 환경영향평가제도로 전개된다. 1992년 리우환경회의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 속에서 환경영향평가의 근거를 마련하였고,<sup>29)</sup> 이 이후 국제적으로 지속적인 개발을 위하여 경제적 원조를 제공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시와 연계되도록 하고 있다.<sup>30)</sup>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국제적 흐름과 함께 우리 환경법제에서는 환경법의 전개과정과 환경영향평가법은 그 궤적을 함께 한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실정법상의 흔적은 1963년 제정된 공해방지법이 개정되면서 나타난다. 1971년 전면 개정된 공해방지법은 제16조에서 「공해사전대책」이라는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최초의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1977년 급변하는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된 환경보전법은 제5조에 「사전협의」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인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sup>31)</sup> 그러나 미국의 제도를 모방하여 규정되었던 이 조항은 어디

28) 이에 대하여 자세히는 한귀현, 미국환경법의 이론과 실제, 2001, 185면 이하 참조.

29)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원칙1과 4 참조.

30) 전재경, 환경영향평가법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5, 42면 참조.

까지나 영향평가가 아닌 사전협의에 불과하였고, 1979년 개정된 환경보전법에서 처음으로 명문의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제5조에 규정되었다. 이 이후 1981년과 1986년 두 차례의 개정작업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더욱 확대되었고,<sup>32)</sup>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의 시대가 개막되면서 동법 제2장에 별도로 환경영향평가를 규정하여 보완하였다.

1993년 환경정책기본법 제2장 환경영향평가를 확대·개편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고,<sup>33)</sup> 이 법은 지방자치체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1997년 대폭 개정되어 시·도가 조례로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환경정책과 평가를 위한 연구원을 설립 및 환경영향재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그 후 동 법은 1999년 12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통합되어 통합환경영향평가시대가 도래하였다.<sup>34)</sup>

##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법제화와 지도원리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법제화에 있어서 핵심은 환경법의 기본원칙 중에서 사전배려의 원칙과 협력의 원칙의 적용이라 할 수 있다. 먼저 국가기관간의 협력은 현행 통합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에 의하여 시행되는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에 의한 사전환경성의 검토

31)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미국의 제도를 모방하여 도입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간단히 홍준형, 환경법, 2001, 188면.

32)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81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1982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33) 1993년 6월 11일 법률 제4567호

34) 통합영향평가법의 제정이 환경 및 관련분야의 통합을 통하여 어느 정도 효율성을 제고한다하여도 분야별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소관부처가 담당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통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박대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발전과제, 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0. 4. 7, 발표문, 홍준형 환경법, 191면에서 재인용.

에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계획 등이 특정한 사업이나 특정한 시설의 설치가 자연환경과 인간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생태적·환경적 영향을 검토·분석·예측하고 평가하여 이러한 사업이나 시설의 설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반하여 사전환경성 검토는 각종의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하고 시행하면서 타당성 조사 등 계획 초기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추구하는 제도이다.<sup>35)</sup>

환경법의 지도원리 중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사전배려의 원칙과 협력의 원칙 등이다. 사전배려의 원칙은 미래 예측적이고, 형성적·계획적 조치들을 통하여 국가행위의 주체들은 환경보호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가능한 한 환경영향을고려하여 생태계의 기초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sup>36)</sup> 이와 함께 협동의 원칙은 환경보전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사회가 협동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 IV.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영과 실천방향

###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영

####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기능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각종의 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할 환경오염

35) 홍준형, 환경법, 2002, 177면 이하 참조.

36) 한귀현, 환경법의 기본원리, 세종출판사, 1997, 63면.

내지 자연환경의 파괴 등 환경보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업의 실시 전에 그 영향의 정도와 내용 등을 검토하여 환경파괴의 방지대책이나 대체안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렇게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자에게 환경규제의 수단이 아니라, 비강제적인 정책수단으로서 환경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

환경보전이란 목표를 위해서는 오염물질의 배출규제 등과 함께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적 규제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각종 개발사업이 그 계획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된다면, 종합적인 평가가 사전에 이루어짐으로서 환경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개발사업자는 환경과 개발간의 조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개발수단을 선택하게 된다. 그렇지만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개발과 조화를 이루는 만능의 제도라고 할 수는 없다.<sup>37)</sup>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법의 기본원리를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sup>38)</sup>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먼저 정책을 형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과 보전정책을 형성하고 결정하는 데 하나의 법적 도구라고 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절차에 의하여 작성된 평가서는 국가의 환경정책을 수립하거나, 이와 관련된 법안, 계획안, 개발안 등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다. 국가는 환경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계획이나 자원들을 개선하고 조화롭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할 책무를 진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국가의 책무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sup>39)</sup> 동

37) 정성철, 올바른 시각에서의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발전적인 방향제시를 위한 토론회, 1999, 35면 참조.

38) 환경법의 기본원리는 대략 사전배려원칙, 존속보장원칙, 협동원칙과 원인자부담의 원칙 등을 들 수 있다.

39) 전재경, 환경영향평가법의 사회적 기능과 활용방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발전적

제도의 또 다른 기능을 살펴보면 환경규제기능과 환경보전수단 등이다. 개발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개발사업의 환경침해 여부를 미리 판단하게 하여 환경파괴나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고 결과적으로는 환경보전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동 제도는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정기능을 담당한다.<sup>40)</sup> 환경문제에 있어서 항상 핵심에 있는 개발과 환경의 상호관계는 어떤 것을 우선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양자의 적절한 조화를 추구하여 갈등을 해소시킴으로써 해결이 가능하다.<sup>41)</sup> 그 외에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주민과의 관계에서 이해조정기능 역시 담당한다. 통합환경영향평가법은 제6조에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서에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개발사업에서 당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함으로써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 (2) 환경영향평가법의 내용

1999년 통합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제정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

방향제시를 위한 토론회, 1999, 20면.

- 40) 경제개발과 환경보전간의 대립은 1992년 리우회의에서 논쟁을 벌인 주제이다. 양자간의 대립양상에 대해서는 윤상욱 역, 보존이나, 개발이나 (Norman Myers & Julian L. Simon, Scarcity or Abundance?), 도서출판 따님, 1997 참조.
- 41) 물론 여기서 국가정책담당자들은 환경보호보다는 국민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개발을 통한 경제성장을 선호한다. 환경보호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후변화 방지협약이라고 할 수 있다. 동 협약은 1979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기후회의를 시작으로 1988년 토론토 기후변화협약안을 확정된 후, 19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하여 1994년 발효되었다. 그렇지만 동 협약을 실천하기 위한 1997년 교토의정서에 대하여 미국은 2002년 경제성장을 위하여 교토의정서에 가입하지 않고, 세계 혜택 등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온실가스를 2012년까지 18%를 감축하겠다는 독자적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조선일보 2002. 2. 15일자 참조.

향평가법은 환경, 교통, 재해와 인구에 관한 영향평가를 종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법률 제5877호로 제정된 동평가법은 6장 42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sup>42)</sup>

동법은 제4조 제1항에서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의 조성, 관광단지의 개발 등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군을 규정하고, 대상사업의 자세한 범위는 동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외에도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도 시·도별로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동조 제3항에 규정을 두어 가능한 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그 다음 동법 제5조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조항에 의하여 사업자는 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당해사업이 환경·교통·재해 및 인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를 작성하면서, 제6조에 의하여 설명회·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평가법 제7조는 사업자가 평가서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을 영향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대행업을 위하여 일정한 기술능력과 장비 등을 갖춘 자로 하여금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의 평가분야별로 각부의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 제17조에서는 사업자가 사업의 승인기관에 평가서를 제출하고, 승인기관은 분야별로 관계기관에 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9조 제1항에서는 사업의 시행으로 환경·교통·재해 등에 해로운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평가서의 협

42) 새로 제정된 통합환경영향평가법의 내용에 대해서 이미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 문헌으로는 강현호, 환경영향평가제도, 토지공법연구 제11집(2001. 2), 323면 이하.

의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 사업자 및 그 사업의 승인기관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평가서의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은 평가서를 검토한 결과를 사업승인기관에 통보하고, 사업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이행하도록 평가법 제20조에 규정하여 평가서의 작성과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외에 평가법 제22조에는 이의신청을, 제25조에는 사업자의 의무를 제28조에는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평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0조에는 환경영향평가의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3조는 협의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여 제재를 가하고 있다.

##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방향

### (1) 현행 통합환경영향평가법의 문제

전술한 현행 통합환경영향평가법의 내용은 과거 환경영향평가법에 비하여 환경규제보다는 비강제성을 띠고 있는 일종의 정책수단으로서 변화하였다.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요소들을 포괄하여 합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자는 의미에서 제정된 통합환경영향평가법이지만, 시행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sup>43)</sup>

먼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에서 동법은 너무 획일적으로 규정하여 영향평가를 형식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사업규모에 따라서 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대상을 확정하는데, 동시행령 제2조는 사업에

43) 여기서는 비중이 큰 문제점을 중심으로 논술한다.

정지가 도시나 농촌, 대지나 전답, 임야를 불문하고 사업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작성대상의 확정기준의 단편성은 정확한 영향평가를 어렵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항목에 대하여 제29조 제1항에서 환경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동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작성에관한규정 제5조는 평가항목을 자연환경분야 5개 항목, 생활환경분야 11개 항목, 사회·경제적 환경분야 7개 항목 등 23개 평가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서작성은 환경영향평가의 특성상 평가항목간의 유기적인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평가해야 하나, 실제로 규정에 의하면 각 항목은 별도로 작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항목간의 연계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sup>44)</sup>

그 다음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5조는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의무를 규정하고, 동법 제7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을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게 하여, 제8조에서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에서 보듯이 환경영향평가서의 대부분이 사업자의 의뢰에 의하여 전문기관으로서 대행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서 문제는 사업자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지정과 그 비용의 부담은 대행자가 현실적으로 사업자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대행자가 사업자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사업자의 의사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는 부실화될 가능성이 많다.

44) 이러한 영향평가 항목간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강명휘/이무춘, 환경영향평가서의 평가항목간 상호연계성에 관한 연구, 환경영향평가 제8권 제3호(1999), 50면 참조.

환경영향평가는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서의 작성과 평가서의 협의과정 등 2단계의 절차를 밟는다. 이러한 절차에서 문제점은 통합환경영향평가법 제5조 이하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서를 작성한 후에 제출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는 기본적인 사업이 확정된 후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가 형식적이고 단순히 절차적으로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2) 환경영향평가법의 전개방향

이미 앞에서 언급되었던 통합환경영향평가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그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동법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먼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에서 사업규모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대상을 확정하는데, 사업예정지가 도시나 농촌, 대지나 전답, 임야를 불문하고 사업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획일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너무 단편적이고 형식적이다. 따라서 환경보전의 목적에 합당한 환경영향평가를 위해서는 면적뿐만 아니라, 인구수, 당해개발계획이 주변에 미치는 정도 등 부수적인 기준척도를 개발하여 좀 더 구체적인 기준들을 규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 다음 영향평가항목에 대한 개선방안은 각 평가항목간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리적 특성을 파악하여 자연적·지리적·경제적·문화적 및 사회적 실정에 맞는 평가기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 외에도 평가절차에 있어서 평가서 초안의 작성시기가 사업시행이 확정된 후로 규정되어 있어서,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환경영향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시기와 방법이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법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적정하게 관리하려는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과감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 V. 맺음말

이미 인류사회는 산업혁명 이후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얻은 혜택과 함께 수반되는 부작용으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지난 세기 후반 짧은 기간에 하나뿐인 지구는 급속도로 늘어나는 환경오염에 신음하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또한 남북으로 분류되는 지구상의 빈부격차는 점차 간격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환경에 대한 심각한 위협요소라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주장하며 환경보전과 조화를 시도하였던 리우회의의 시도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지구상의 과제로 남아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개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포기할 수 없는 인류의 문제다. 그런 점에서 21세기가 환경국가의 시대라는 것은 환경이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

환경은 오염되기 전에 보전해야하고, 오염된 이후에는 그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이미 시화호 사건이나 동강댐 사건에서 엿볼 수 있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서 인류공동체는 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으며, 그런 점에서 환경법의 사전배려원칙은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의하여 등장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 특히 우리의 경

우 그 효율성을 인식하여 환경, 교통, 재해, 그리고 인구 등 인간이 살면서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법제화하여 운영한다는 것은 환경에 대한 사전배려라고 볼 수 있다. 통합환경영향평가법은 그런 의미에서 나름대로 존재가치를 향유한다. 그렇지만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제는 여러 문제를 갖고 있다.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개선책을 중심으로 빠른 시일 내에 좀 더 현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환경의 사전적 보전이라는 목표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

## 【Zusammenfassung】

# Umweltstaat und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

Kim, Sang-Kyum

In dieser Arbeit wurde das Thema Umweltstaat und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 behandelt. Heutzutage ist der Umwelt am wichtigsten der Gegenstand und für das Leben von uns das Ziel. Anders als das Grundgesetz in Deutschland findet sich die koreanische Verfassung keine Regelung "Staatsziel Umweltschutz". Sie regelt doch das Grundrecht auf Umwelt in Art. 35. Dieser Artikel beinhaltet auch die Umweltschutzpflicht von dem Staat und Volk.

Umweltstaatsprinzip setzt trotz aller Einschränkungen den verfassungsrechtlichen Grundsätzen von Demokratie, Souveränität, Rechtsstaat und Sozialstaat, usw. gleich, und könnte dann bezeichnen. Im Umweltrecht gibt es einige Grundprinzipien: Vorsorgeprinzip, Verursacherprinzip, Gemeinlastprinzip und Kooperationsprinzip. Davon sind die Wichtige in der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 Vorsorgeprinzip und Kooperationsprinzip. Da die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 als eine Institution vom Umweltschutz die wichtige Rolle spielt, sind die

beiden Prinzipien erforderlich.

In der koreanischen Umweltrechtsgeschichte bekommt die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 eine wichtige Bedeutung. Seit 1977 gibt es die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 im koreanische Umweltgesetz. In 1999 hat sich das System von der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 verändert. Für den Umweltschutz wurde ein gesamtes Gesetz der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 festgesetzt. Dieses Gesetz beinhaltet die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 über Umwelt, Verkehr und Unglück usw. Das zielt auf Umweltschutz und würde in der Zukunft den Umweltstaat verwirklichen.